

2028학년도 감리교신학대학교 입시 기본계획

(수시, 정시 '나')

1. 모집단위 / 전형유형 / 모집인원

| 모집시기 | 모집단위 | 정원구분 | 전형유형 | 전형명 | 모집인원(명) | |
|----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수시 | 신학부 신학 기독교교육학 종교철학 기독교심리상담학 | 정원내 | 학생부 (교과) | 일반전형 | 80 | 137 |
| | | | | 추천자전형 (담임교역자,교목,교사) | 25 | |
| | | | |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| 10 | |
| | | | | 검정고시출신자 | 22 | |
| | | 정원외 | 학생부 (교과) | 농어촌학생 | 4 | 21 |
| | | | | 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| 4 | |
| | | | | 특수교육대상자전형 | 10 | |
| | | | | 재외국민과 외국인(2%) | 3 | |
| | | | | 재외국민과 외국인 (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) | 제한없음 | |
| | | | | | | |
| 정시 '나' | 신학부 신학 기독교교육학 종교철학 기독교심리상담학 | 정원내 | 수능 | 일반전형 | 22 | 22 |
| | | 정원외 | 수능 | 농어촌학생 | 수시모집 미충원 이월인원 | - |
| | | | | 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| | |
| | | | | 재외국민과 외국인(2%) | 제한 없음 | |
| | | | | 재외국민과 외국인 (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) | | |

1. 신학부로 모집 후 2학년 진급 시, 신학전공, 기독교교육학전공, 종교철학전공, 기독교심리상담학전공 으로 배정
2.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.
3. 수시모집 전형일이 다른 전형의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함.

2. 지원자격

■ 수시모집

| 전형명 | 지원 자격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일반전형 | 가. 202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나.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(검정고시 출신자 제외) 다.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|
| 추천자전형 (담임교역자,교목,교사) | 가. 202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23년 2월 이후 졸업자 나.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|
|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| 가. 202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23년 2월 이후 졸업자 나.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다.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라.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. 국가보훈대상자 -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. 다문화가정 자녀 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3. 다자녀가정 자녀 -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의 자녀 4. 군인, 경찰, 소방공무원(순직자 포함)의 자녀 5. 환경미화원의 자녀 6.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7. 농어촌 목회경력 3년이상(고교재학기간 3년 포함)된 목회자의 자녀 8. 자립지원대상자 [아동복지법 시행령]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①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③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|
| 검정고시출신자 | 가. 검정고시 출신자 / 나.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|
| 농어촌학생 | 가.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 제 2조에 의한 도서·벽지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2023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.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(졸업예정자 포함)까지 학생의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·어촌 읍·면지역 또는 도서·벽지지역인 자 2.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(졸업예정자 포함)까지 부·모·학생 모두의 거주지 및 학생의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·어촌 읍·면지역 또는 도서·벽지지역인 자 나. 읍,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, 외국어고, 예술고, 체육고는 제외 다.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라.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|
|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| 가.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'가'항에 해당하는 자 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.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|
| 특수교육대상자전형 |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다.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 라.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|

■ 정시 '나'

| 전형명 | 지원 자격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일반전형 | 가. 고등학교졸업자 및 202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|
| 농어촌학생 | 가.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 제 2조에 의한 도서·벽지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.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(졸업예정자 포함)까지 학생의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·어촌 읍·면지역 또는 도서·벽지지역인 자 2.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(졸업예정자 포함)까지 부·모·학생 모두의 거주지 및 학생의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·어촌 읍·면지역 또는 도서·벽지지역인 자 나. 읍,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, 외국어고, 예술고, 체육고는 제외 다.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라.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|
|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| 가. 고등학교졸업자 및 202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'가'항에 해당하는 자 1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.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|

3.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가. 수시

| 모집 단위 | 정원 구분 | 전형명 | 선발 방법 |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(%) | |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| 학생부 | | 면접 | 기타 | 계 | |
| | | | | 교과 | 비교과 | | | | |
| 신학부 | 정원 내 | 일반전형 / 추천자전형 /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| 일괄합산 | 72 | 8 | 20 | | 100 | |
| | | 검정고시출신자 | 일괄합산 | | | 20 | 80 | 100 | |
| | 정원 외 | 농어촌학생 | 일괄합산 | 72 | 8 | 20 | | 100 | |
| | |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| 일괄합산 | 72 | 8 | 20 | | 100 | |
| | | 특수교육대상자 | 일괄합산 | 72 | 8 | 20 | | 100 | |
| | | 재외국민과외국인(2%) | 일괄합산 | | | 30 | 70 | 100 | |
| | | 재외국민과외국인 (제한없는 모집) |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| 일괄합산 | | | 30 | 70 | 100 |
| | | |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| 일괄합산 | | | 30 | 70 | 100 |
| | | | 북한이탈주민 | 일괄합산 | | | 100 | | 100 |

1. 최저학력기준 없음.
2. 재외국민과외국인의 기타는 서류평가이며 제출서류를 통하여 학업, 진로,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.
면접의 방식은 학교 사정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형식을 취하며, 면접 F 시 서류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.

나. 정시 '나'

| 모집 단위 | 정원 구분 | 전형명 | 선발방법 |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(%) |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
| | | | | 수능 | 면접 | 기타 | 계 | |
| 신학부 | 정원내 | 일반전형 | 일괄합산 | 80 | 20 | | 100 | |
| | | 농어촌학생 | 일괄합산 | 80 | 20 | | 100 | |
| | 정원외 |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| 일괄합산 | 80 | 20 | | 100 | |
| | | 재외국민과 외국인(2%) | 일괄합산 | | 30 | 70 | 100 | |
| | | 재외국민과외국인 (제한없는 모집) |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| 일괄합산 | | 30 | 70 | 100 |
| | | |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| | | 30 | 70 | 100 |
| | | | 북한이탈주민 | | | 100 | | 100 |

1. 최저학력기준 없음.
2. 재외국민과외국인의 기타는 서류평가이며 제출서류를 통하여 학업, 진로,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.
면접의 방식은 학교 사정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형식을 취하며, 면접 F 시 서류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.

4. 학생부 반영방법

가. 학생부 반영비율

| 모집시기 | 학생부 반영 총점 | 교과 | 비교과 |
|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
| 수시 | 800점 | 90% | 5%(출결) / 5%(봉사) |

※ 비교과 성적이 없을 경우 "0" 점 반영(비교과 성적이 없는 교육과정 이수자 등)

※ 점수산출 활용지표 순서: 원점수 > 이수단위(2단위 이상)

※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반영,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반영.

※ 학력인정교(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, 대안교육특성화 학교 등), 직업교육 및 대안교육 위탁과정은 전체 교과목 반영.

나.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 및 점수 산출 활용 지표

| 모집시기 | 반영 교과 | 점수산출지표 |
|------|--|--------|
| 수시 | 각 학년에서 국어교과, 영어교과,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를 각 1과목씩(최고점수) 3과목을 반영하고 전체 학년에서 총 9과목을 반영 | 원점수 |

※ 지정교과가 없을 경우 ① 사회 또는 과학 교과목 ② 제2외국어 교과목 ③ 학교 지정 교과목 순

※ 단위수가 "2" 이상인 교과목만 반영, 수강생 수가 30명 이상인 교과목만 반영, 진로선택과목 미반영.

다. 학생부 비교내신 반영방법: 2027년 3월 확정 및 공지

5. 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

| 모집시기 | 수능영역별 반영비율(%) | | | 점수산출활용지표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| 국어 | 영어 | 탐구 | | | | | | | |
| 정시 '나' | 40 | 40 | 20 (사탐,과탐,직탐 중 최고 1과목) | 1.백분위: 국어, 탐구 / 2.등급: 영어 | | | | | | |
| 영어 등급 간 반영점수 | 등급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
| | 반영점수 | 95 | 85 | 75 | 65 | 55 | 45 | 35 | 25 | 15 |

■ 한국사 응시 필수

6.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(수시 및 정시)

가. 입학정원의 2%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

| 구분 | 지원자격 (입학 허용 기간 : 고교 졸업 후 2년 6개월 이내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재외국민과 외국인 (정원2%) | ① 해외에서 3년(1,095일) 이상 근무(재직)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체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② 해외체류기간 ☞ 학생: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/4 이상 ☞ 부모: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/3 이상 |

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(정원의 2% 선발)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

-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,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/4 이상, 부모의 경우 2/3 이상으로 표준화

나.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

| 대 상 | 지 원 자 격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|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,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(외국인 TOPIK 4급 이상) |
| 북한이탈주민 |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|
|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초·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(예정)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•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(외국인 TOPIK 4급 이상) |

다. 공통지원자격: 기독교 세례를 받은 자

라. 제출서류(아래 서류 외 기타 제출 서류 확인 필요)

① 자기소개서

② 기타 서류

- 출석교회 추천서
- 비교과활동 확인서
- 어학능력 증빙서류
- 출신 고등학교 프로필

③ 기타 자세한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(www.mtu.ac.kr)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7. 기타

가. 수시모집 복수지원 : 수시모집의 특별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.(2027학년도와 동일)

나. 학교폭력 조치사항

①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, 전체 평가 결과와 함께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함.